의안검토보고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5년 12월 일

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준 봉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1995년 12월 일

내무위원회 전문위원

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본 안건은 1995. 11. 24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. 11. 25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14480호)이, 개정시행(95. 1. 1)됨에 따라, 시의 보조·보좌기 관의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기, 동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.
- 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(95. 7. 1)으로, 부시장의 정수가 변경되고,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「조례, 규칙의 제정·개·폐에 관한 사항」을 별도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었기 개정,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「부시장」을 「행정부시장」으로 하고, 「기획담당관」을 「기 획관」으로 개정함. (안 제2조)
- 「중요한 조례, 규칙 제정·개폐에 관한 사항」을 삭제함. (안 제3조)
- ㅇ 「기획담당관실」을 「기획관실」로 개정함. (안 제6조)

3. 검토의견

- ㅇ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- ㅇ 동 조례중 제2조에서 「부시장」을 「행정부시장」으로 제3조에 서는 「중요한 조례, 규칙 제정·개폐에 관한 사항」을 금년

7. 1부터는 별도 「조례 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, 의결토록 규정 된바 삭제하는 것이며, 제6조의 「기획담당관실」을 「기획관실」로

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시의 보조, 보좌기관 명칭의 변경등으로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 정하여 보완하는 것임.